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

을 것

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실제로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를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정보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정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 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제20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제22조의2제1호의2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중 “세대원”을 “세대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전단 중 “제1호 본문”을 “제1호”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 본문 중 “제1호 단서”를 “제2호”로 한다.

2.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별표 3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

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u>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u> <u>가. 농지·축사·임야·원예 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u> <u>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u> <u>2. 농업법인의 경우</u> <u>가. 농지·축사·임야·원예 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u> <u>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u> <u>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은 다</u>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u> <u>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u> <u>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실제로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u> <u>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법 제6조의2제1항제5호</u> 에 따른 조사·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u>법 제5조제1항</u> 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확인) -- ----- <u>법 제6조의2제1항제6호</u>----- ----- ----- -----

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정보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
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
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4.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
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
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
업법인의 설립신고·변경신고
·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
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
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

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소
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업
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
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
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정보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정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
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
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
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
게 위임한다.

1. (생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고

3. <u>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u> 4. <u>삭 제</u> 5. (생 략)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생 략)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u>세대 원에 관한 정보</u> 3.~4. (생 략) 5. <u>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u> 가.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나. 「<u>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u>」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 역소득보조금 다. 삭제 6.~10. (생 략)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u>세대 원(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u> 3.~4. (현행과 같음) 5. <u><삭 제></u> 6.~10. (현행과 같음)
---	---

[별표 1의2] 과징금의 세부 부과 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신 설>

2. (생략)

비고

1. 제1호 본문에 따른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과 양도 시

[별표 1의2] 과징금의 세부 부과 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삭 제>

2.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비고

1.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과 양도 시

시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하되, 그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값으로 한다.

3. (생략)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하되, 그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값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

가. -----

동기·내용·결과 및 그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
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줄일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신 설>

2. 개별기준

-----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다.

나. -----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법 제4조 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 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5만 원	50만 원	100 만원
나. 법 제5조제2항 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 우 다.~바.(생략)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5만 원	50만 원	100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2항 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 우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5만 원	50만 원	100 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 는 증명을 한 경우 다.~바.(생략)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5만 원	50만 원	100 만원